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등과 연계〉

■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212호)

2024. 11.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1.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4~'28) 개요	8
2.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1~'30) 개요	9
3.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1~'25) 개요	10
4. 학생 건강관련 부처별 종합대책 현황	11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태선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4. 9. 24.

다. 회 부 일 : 2024. 9.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학생 건강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 기본계획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이 정책적으로 연계되어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계획들이 개별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립되어 동 기본계획과 상호 연계성 및 보완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교육부장관이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 건강 증진 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의3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3(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② (생략) <u><신설></u>	제2조의3(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u>
③·④ (생략)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교육부장관이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수립·시행하는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으로, 범부처 합동으로 정책 목표, 기본 방향, 추진 과제를 마련하고 시행·조정·평가하는 체계임.

이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영역을 포괄하고, 법적으로는 「학교보건법」 제2조의3¹⁾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회 변화와 새로운 건강위험요인 등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범부처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배경에서 수립되고 있음.

한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계획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근거하여 질병 사전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02년부터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보완계획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총 5차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왔음.

또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이하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이라 함)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며,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1) 「학교보건법」 제2조의3(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안 등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함.

< 관련 기본계획 비교표 >

구분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 주체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수립 주기	5년	5년	5년
정책 대상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모든 학생	전 국민	전 국민
주요 내용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등	-국민건강증진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인력의 관리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등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부처 또는 기관과의 협력 방안 등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나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 등 여타 관련 계획들과 상호 참고와 연계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이러한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시 이들 관련 계획들과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²⁾와 같이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의 내용에 부합하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인적자원 개발·지원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도록 할 것을 규정하기도 하는데,

이는 서로 연관된 정책 영역에서 수립되는 다양한 계획들 사이에 모순이나 상충하는 내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고, 계획들이 조화롭게 연계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 계획 간의 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된다면 정책 간의 상호 연계성을 파악하고 행정작용이 보다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수 있음³⁾.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세부과제 중 ‘마약류 등 각종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치유 지원’에서는 음주, 흡연 등 유해 약물에 대한 치유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중점과제 중 ‘금연’, ‘절주’와 관련성이 있고,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세부과제 중 ‘정신건강 위기학생 조기발견 체계 강화’ 및 ‘정신건강 위기학생 지원 강화’는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 핵심과제 중 ‘정신질환 조기인지 및 개입 강화’, ‘집중 치료 및 지속 지원 등 치료 효과성 제고’ 등과 관련성이 있는 등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작용을 위해 계획 간 연계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되어야 한다.

3) 국회법제실, 2024, 「법제기준과 실제」 276p

< 기본계획간 연관성 예시 >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세부과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중점과제)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핵심과제)
◦ 마약류 등 각종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치유 지원	◦ 금연 ◦ 절주	
◦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건강한 식품선택 지원	◦ 비만	
◦ 보다 건강하고 질높은 학교급식 제공 ◦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건강한 식품선택 지원	◦ 영양	
◦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 정신건강 위기학생 조 기 발견 체계 강화 ◦ 정신건강 위기학생 지 원 강화	◦ 자살예방 ◦ 지역사회 정신건강	◦ 정신질환 조기인지 및 개입 강화 ◦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위험요인 관리

또한,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학생·학교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범
부처 차원의 계획으로 정부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 역
할분담 및 포괄적 협력체계 강화로 정책 시너지 효과 기대와 중복투
를 방지함을 계획의 의의 및 목표로 하고 있고⁴⁾,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추진 중인 대책은 당
초대로 추진하되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통합하겠다고 하면서 학생
건강 관련 부처별 종합대책 현황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정신건강
복지기본계획(구 정신건강종합대책)을 명시하였던 것⁵⁾ 또한 이들 계
획간 연계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음.

4)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19~'23) 2p 계획의 의의 및 성격 참고

5)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19~'23) 33p 학생 건강관련 부처별 종합대책 현황(22건) 참고,
붙임자료 4 「학생 건강관련 부처별 종합대책 현황(22건)」 참조.

교육부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경우 흡연·음주 예방, 구강관리, 비만예방, 정신건강관리, 감염병, 영양, 신체활동 등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면서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과의 연계 필요성이 있지만,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 경우 대부분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환경 제공, 자립, 자살 예방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대상자가 극히 일부로 한정되고 전문성을 요하는 정신질환 관련 정책을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연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대구·인천·경기 교육청은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과 연계 관련, 정신건강 지원에 대한 정책은 의료기관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학교에서 정신질환 관련 문제를 지원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84

참고 1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4 ~'28) 개요

□ [정책영역 01] 학교체육 활성화 4대 핵심과제 추진

정책과제	세부과제
1.1. 학교단위 체육활동 확대	1-1-1. 신규 체육수업 시간 최대 확보
	1-1-2. 계속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
1.2. 학생 맞춤형 체력향상 지원	1-2-1. 신규 학생 건강체력 수준 진단체계 강화 및 진단 대상 확대
	1-2-2. 계속 학생 건강체력교실 운영 다양화
1.3. 체육활동 일상화 및 관련 인프라 확충	1-3-1. 신규 학교·가정 연계 학생 중심 체육활동 강화
	1-3-2. 신규 수영장 및 체육관 등 학교 체육시설 조성
1.4.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체육활동 강화	1-4-1. 신규 체육단체 연계 프로그램 다양화
	1-4-2. 신규 늘봄학교 운영지원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 강화
	1-4-3. 신규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한 민관 참여형 운영체제 마련

□ [정책영역 02] 학생 중심 건강서비스 확대

정책과제	세부과제
2-1. 건강 수준 진단 내실화 및 증진활동 강화	2-1-1. 신규 생애주기 건강검진체계 통합
	2-1-2. 신규 학생 건강 수준 진단체계 운영 효율성 제고
2-2. 정신건강 취약 학생 보호 강화	2-2-1. 신규 정신건강 위기학생 조기 발견 체계 강화
	2-2-2. 신규 정신건강 위기학생 지원 강화
2-3. 건강취약 우려 학생에 대한 밀착지원	2-3-1. 계속 장애 학생 건강검진 및 의료서비스 강화
	2-3-2. 신규 마약류 등 각종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치유 지원
	2-3-3. 계속 과몰입·과의존·중독 학생 조기 개입 및 지원 강화
2-4. 주요 질환·질병 예방관리 강화	2-4-1. 계속 만성·희귀 질환 등 학생의 보호 및 지원 강화
	2-4-2. 신규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정책영역 03]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정책과제	세부과제
3-1. 학교시설의 유해물질 관리 강화	3-1-1. 계속 석면 건축물 일상관리 및 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확보
	3-1-2. 신규 교사 내 공기질 관리체계 강화 및 환경위생 개선
	3-1-3. 신규 교육시설 유해물질 관리 철저
3-2. 학교주변 위험요인 관리 강화	3-2-1. 계속 학교 주변 건강 유해시설 등 관리 철저
	3-2-2. 신규 학교 인근 대규모 공사장 등에 따른 유해물질 관리 강화
3-3.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3-3-1. 신규 보다 건강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
	3-3-2. 신규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건강한 식품선택 지원

□ [정책영역 04] 건강교육 활성화 및 지원체계 강화

정책과제	세부과제
4-1. 성장·발달단계 기반 교육지원 내실화	4-1-1. 신규 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한 건강교육 강화
	4-1-2. 신규 교수·학습자료 개발지원 및 이용의 편의성 제고
	4-1-3. 계속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및 행정 지원
4-2. 가정·지역사회 연계 건강교육 활성화	4-2-1. 신규 가정과 연계한 건강생활 습관 형성 지원
	4-2-2. 계속 지역·유관기관 연계 지원 및 홍보 강화
4-3. 범부처 및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4-3-1. 계속 세부 실행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협의기구 운영
	4-3-2. 신규 미래 발생 가능한 건강문제 조사 등 선제적 대비
	4-3-2. 신규 위기 대응능력 향상 지원
4-4. 지역사회 인·물적 인프라 구축 및 확대	4-4-1. 신규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설치·운영
	4-4-2. 신규 건강정책 관련 담당인력 인적교류 활성화
	4-4-3. 계속 학생 건강증진 전문인력 배치 확대

자료: 관계부처 합동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

건강수명 연장, 건강형평성 제고

기본 원칙

- 1 국가와 지역사회의 모든 정책 수립에 건강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 2 보편적인 건강수준의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함께 추진한다.
- 3 모든 생애과정과 생활터에 적응한다.
- 4 건강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한다.
- 5 누구나 참여하여 함께 만들고 누릴 수 있도록 한다.
- 6 관련된 모든 부문이 연계하고 협력한다.



건강생활 실천

- 1 금연
- 2 절주
- 3 영양
- 4 신체활동
- 5 구강건강



정신건강 관리

- 6 자살예방
- 7 치매
- 8 중독
- 9 지역사회 정신건강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 10 암
- 11 심뇌혈관질환
- 12 비만
- 13 손상



감염 및 기후변화성 질환 예방관리

-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15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 16 기후변화성 질환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 17 영유아
- 18 아동·청소년
- 19 여성
- 20 노인
- 21 장애인
- 22 근로자
- 23 군인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 24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
- 25 건강정보 이해력 제고
- 26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
- 27 자원마련 및 운용
- 28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자료: 보건복지부

참고 3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1 ~'25) 개요

비전	마음이 건강한 사회, 함께 사는 나라
----	----------------------

정책 목표	1. 코로나19 심리방역을 통한 <u>대국민 회복탄력성 증진</u> 2. 전 국민이 <u>언제든 필요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u> 3. 정신질환자의 <u>중증도와 경과에 따른 맞춤형 치료환경</u> 제공 4. 정신질환자가 <u>차별 경험 없이 지역사회 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u> 5. 약물 중독, 이용 장애 등에 대한 <u>선제적 관리체계</u> 마련 6. 자살 충동, 자살 수단, 재시도 등 <u>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u> 구현
----------	--



추진전략	핵심과제
전 국민 정신건강증진	1. 적극적 정신건강증진 분위기 조성 2. 대상자별 예방 접근성 제고 3.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대응역량 강화
정신의료 서비스 /인프라 선진화	1. 정신질환 조기인지 및 개입 강화 2. 지역 기반 정신 응급 대응체계 구축 3. 치료 친화적 환경 조성 4. 집중 치료 및 지속 지원 등 치료 효과성 제고
지역사회 기반 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 추진	1. 지역사회 기반 재활 프로그램 및 인프라 개선 2. 지역사회 내 자립 지원 3. 정신질환자 권익 신장 및 인권 강화
중독 및 디지털기기 이용장애 대응 강화	1. 알코올 중독자 치료 및 재활서비스 강화 2. 마약 등 약물중독 관리체계 구축 3. 디지털기기 등 이용장애 대응 강화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1.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위험요인 관리 2. 고위험군 지원 및 사후관리 3. 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정신건강정책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1. 정책 추진 거버넌스 강화 2. 정신건강관리 전문인력 양성 3. 공공자원 역량 강화 4. 통계 생산체계 정비 및 고도화 5. 정신건강분야 전략적 R&D 투자 강화

자료: 관계부처 합동

참고 4

학생 건강관련 부처별 종합대책 현황(22건) -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19~'23)에서 발췌

영역	종합대책	주관부처	관련 법령
종합 (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제4차, 2016-2020)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아동정책기본계획 (제1차, 2015-2019)	복지부	아동복지법
신체 건강 (10)	국가비만관리종합대책(2018)	복지부	국민영양관리법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국조실	-
	학생감염병예방 종합대책(2016)	교육부	학교보건법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	문체부	국민체육진흥법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	교육부	학교체육진흥법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복지부	국민영양관리법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	식약처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식생활교육기본계획(2015-2019)	농식품부	식생활교육지원법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제3차, 2015-2017)	식약처(국조실, 교육부, 법무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등)	식품안전기본법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관리기본계획('15-'19) 당류/나트륨저감화종합계획('16-'20)	식약처	식품위생법
정신 (5)	정신건강종합대책	복지부 (법제처, 교육부, 고용부, 여가부, 등)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 자복지서비스지원법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복지부(고용부, 교육부, 여가부, 행안부, 과기부, 통계청,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
	2018년 학생자살예방대책 시행계획	교육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
	제4차 스마트폰, 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19-'21)	과기부(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여가부, 방통위) 등 10개부처	국가정보화기본법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여가부	청소년보호법
환경 (5)	교육환경보호 기본계획('18-'22)	교육부	교육환경보호에관한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15-'19)	환경부(부처합동)	학교보건법
	범정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17.9월)	환경부(국무조정실, 기재부, 교육부, 환경부, 산자부 등)	-
	석면 관리기본계획('19-'23)	환경부(교육부, 고용부, 식약처 등)	석면안전관리법
	학교 내 유해물질 관리 종합대책(2015)	교육부	-

자료: 관계부처 합동